
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17. “고압가스설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.

가. 가스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

나. 가목에 따른 설비와 연결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. 다만, 「수소 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.

별표 5 제1호가목4)라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라) 저장설비·처리설비·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지면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

별표 5 제1호가목10)의 본문을 가)로 하고, 같은 목 10)에 나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) 충전설비 상부의 캐노피에는 다음의 설비 외에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다음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

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의 안전도에 관한 확인을 받을 것

① 냉동설비

② 제어설비

③ 전기설비

④ 소화설비

별표 5 제1호나목의 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) 그 밖의 기준

충전시설에 설치한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, 긴급차단장치 및 화염검지기 등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할 것

별표 9의2 제1호다목1) 중 “검지봉, 주밸브, 안전밸브, 압력계 및 긴급탈압밸브”를 “검지봉 및 주밸브”로 하고, 같은 목의 2) 및 3)을 각각 4) 및 5)로 하며, 같은 목에 2) 및 3)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) 배관 등 설치

가) 배관의 재료, 강도 및 두께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

나) 배관·밸브·과압안전장치는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을 유지할 것

다) 배관에는 안전한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과압안전장치, 압력계 및 긴급탈압밸브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

3) 용기 고정프레임 설치

용기를 차량에 고정하기 위한 프레임 및 그 부속품은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적절한 것으로 하고 용기, 배관 및 밸브 등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

부 칙 <제○호, ○○○○.○○.○○.>

제1조 【시행일】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항제17호가목·나목(단서 제외) 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2조제1항제17호나목의 단서 규정은 202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【고압 수소시설에 연결된 저압 수소시설에 관한 경과조치】

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·저장시설·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7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275 (044) 203 - 5215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6. (생략) 17. “고압가스설비”란 <u>가스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.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. 1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-----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.</u> <u>가. 가스설비 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설비</u> <u>나. 가목에 따른 설비와 연결된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수소가 통하는 설비. 다만, 「수소경제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수소연료사용시설에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.</u>
18. ~ 28. (생략)	18. ~ 28. (현행과 같음)
[별표 5]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(제8조제1항	[별표 5]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(제8조제1항제

현행	개정안
제2호, 제28조제4항제2호,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)	2호, 제28조제4항제2호, 제30조제3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2호 관련)
1.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(수소를 제조·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)	1.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(수소를 제조·압축하여 자동차에 충전)
가. 시설기준	가. 시설기준
4) 가스설비기준	4) 가스설비기준
라) <u>처리설비·압축가스설비</u> 및 충전설비는 <u>지상에</u> 설치할 것	라) <u>저장설비·처리설비</u> ----- ----- <u>지면에</u> 접하도록----- -
10) 그 밖의 기준	10) 그 밖의 기준
<u>충전시설에 설치·사용하는 제품이 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</u>	가) ----- -----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나) <u>충전설비 상부의 캐노피에</u> <u>는 다음의 설비 외에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다음의 설비를 설치하</u>

현행	개정안
나. 기술기준 1) ~ 4) (생략) <u><신설></u>	<u>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의 안전도에 관한 확인을 받을 것</u> <u>① 냉동설비</u> <u>② 제어설비</u> <u>③ 전기설비</u> <u>④ 소화설비</u> 나. 기술기준 1) ~ 4) (현행과 같음) <u>5) 그 밖의 기준</u> <u>충전시설에 설치한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, 긴급차단장치 및 화염검지기 등의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실시간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할 것</u>
<u>[별표 9의2]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·기술기준(제8조제1항제6호</u>	<u>[별표 9의2]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·기술기준(제8조제1항제6호</u>

현행	개정안
2) <u>경계표지 설치</u> 차량에 고정된 용기 운반차량에는 그 차량에 적재된 가스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각 붉은 글씨로 "위험고압가스"라는 경계표지를 할 것 3) <u>응급조치장비 비치</u> 차량에 고정된 용기 운반차량에는 그 차량 또는 적재된 용기로부터 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가스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	<u>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</u> 4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5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부 칙 <제○호, ○○○○.○○.○○.> <u>제1조 【시행일】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</u>

현행	개정안
	<u>항제17호가목·나목(단서 제외)</u> <u>및 별표 9의2 제1호다목의 개정</u> <u>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</u> <u>날부터 시행하고, 제2조제1항제1</u> <u>7호나목의 단서 규정은 2022년 2</u> <u>월 5일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 【고압 수소시설에 연결된</u> <u>저압 수소시설에 관한 경과조</u> <u>치】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</u> <u>고압가스의 제조시설·저장시설</u> <u>· 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</u> <u>용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</u> <u>17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</u> <u>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적합하게</u> <u>설치된 것으로 본다.</u>